

문서번호	건강관리과-14620
결재일자	2015.8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가족보건담당	건강관리과장	보건소장	부구청장	
주은지	代주은지	代이춘옥	황원숙	08/04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		권용대		
	법제담당		代신봉근		
	주무관		김하연		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안 확정**

**2015. 8.**

**성북구보건소  
건강관리과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

「치매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,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에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 I 관련 법령

-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20조

## II 개정 이유

- 「치매관리법」이 2011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
- 관련 상위법 변경 : 노인복지법 제29조 ⇒ 치매관리법 제17조

## III 주요 개정 내용

-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시행에 따른 성북구 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 설치·운영의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-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 재정비(안제3조)
- 센터의 위탁운영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규정 신설(안 제4조제4항)
-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용어 등 조문 재정비(안 제5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용·수익의 허가 취소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의 취소사유(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) 삭제(안 제7조제1항제2호)

- 그 밖에 용어 변경(협약→위탁, 수탁자→수탁기관 등) 및 띄어쓰기 정비

## IV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

- 입법예고 결과 : 2015. 7. 2. ~ 22. 의견제출 사항 없음
- 부패영양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법제심사 결과 : 심사결과 반영
  - 심사결과 및 근거 : 제7조제1항제2호 삭제
    - '위탁의 취소'는 행정규제(행정질서법)로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여야 함
    - 제7조제1항제2호의 위탁취소 사유(수탁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)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범위를 벗어나는 '상위법 일탈'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삭제함이 타당함

## V 향후 추진 일정

-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: 2015. 8. 12.
- 조례안 구의회 상정 : 2015. 8. 31. (제236회 임시회)
- 자치법규 공포 : 2015. 10. 1.

붙임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